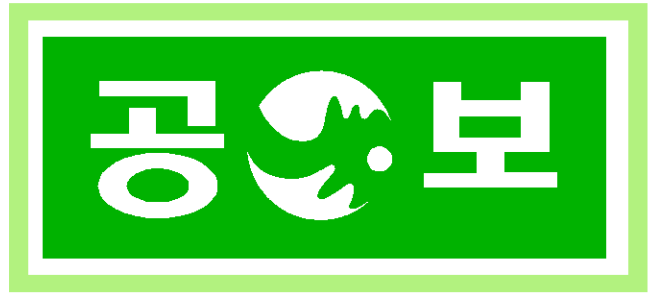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756 호 2012. 5. 25(금)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65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66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416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420호[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421호[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42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5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구성등)”을 “(구성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3인 이하”를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실비보상등)”을 “(실제 비용의 보상 등)”으로 하고, 본문 중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사무국장을 제외한 위원 및 고문”으로 하고, 단서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 이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정원 확대 및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25인 이하”에서 “30명 이내”로 확대(제17조제1항)
- 나.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 지원 규정 신설(제19조제3항)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5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과 주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교실”의 이름으로 직접 또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생활체육시설”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장 생활체육 진흥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주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생활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생활체육단체·생활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학교 체육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8.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
10.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보호와 육성
11.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이하 “교

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생활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 조건 등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강사)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실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①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제10조의 체육진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강료의 징수나 감면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따로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종목별 교실의 운영 계획과 수강료의 징수·반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2.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3.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10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 2. 제4조에 따른 각종 대회 및 생활체육단체 등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5조에 따른 교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구 관계 공무원 1명
-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명
-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 4. 구 생활체육회 임원 5명
- 5.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동별 1명)
- 6.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회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회회의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6조(간사) ①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생활체육 진흥 사업의 종류 및 지원(제3조~제4조)
- 다.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강사, 수강료, 포상 등(제5조~제9조)
- 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구성, 회의, 수당 등(제10조~제18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4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2013년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와 운영, 시설이용, 운영위탁등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함.

나.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범위 [안 제4조]

- 청소년 진로탐색, 진로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청소년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청소년 심신수련,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 및 정보제공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다. 시설의 이용[안 제5조]

- 울산광역시 거주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복구청소년에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 운영의 위탁 [안 제7조]

- 효율적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한 청소년 단체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직원 1명을 두어야 하며,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마. 시설의 운영 및 휴관 [안 제8~9조]

-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탁자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지도감독 등 [안 제10조 ~제 14조]

3. 근거법규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 나. 전화번호 : 052-241-7673, 팩스번호 : 052-289-7669

6.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 위치는 울산광역시 복구 화봉로 80 (연암동 361-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동아리방, 직업체험실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청소년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청소년 심신수련, 여가활동 등을 위한 편의 및 정보제공
4.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①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인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이 대립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5. 그 밖에 시설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가 청소년문화의집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

도 사업개시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9조(시설의 휴관) 청소년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청소년의 진로설계 및 지도, 직업 체험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폐쇄 또는 변경할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금 위탁운영수익금 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시설 및 장비 등은 구청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 이외의 사업운영, 시설이용의 제한, 운영권리 등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보험의 가입)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4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지역연대로 활동할 수 있는 관계기관이 모두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초 “15명 이내” 를 “20명 이내”로 확대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나. 전화번호 : 052-241-7671, 팩스번호 : 052-289-7669

6.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제3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제7조제4호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라고 한다.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복지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여성·아동폭력”이라 함은 여성·아동의 인 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p> <p>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1명 2.(생략) 3.(생략) 4.(생략) 5.(생략) 6.(생략) ④ (생략)</p>	<p>제1조(목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 -----</p> <p>제2조(정의) ----- 뜻은 ----- 1. -----이란 ----- 사람을 말한다. 2. -----이란 -----</p> <p>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 20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으로 -----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한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u>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u>지역내</u>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5. (생략) 6. (생략)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지역 내 _____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생략)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를 관리하고, 여성 아동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 다. 실태 통계자료 관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11조(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_____ <u>각 호</u> _____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_____ <u>따른</u> _____ _____ <u>사람은</u> _____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부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때 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 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제16조(수당 등 지급) _____ <u>국내외</u> _____ <u>범위에서</u> _____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2-421호

울산광역시 복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추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국가별 다문화가족 대표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기관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함.
-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6조 (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신규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나. 전화번호 : 052-241-7671, 팩스번호 : 052-289-7669

6.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복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11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제6조(위원회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6.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다문화관련 전문가</p> <p>④ (생략)</p> <p>제7조(위원회 기능)</p> <p>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제11조(위원의 해촉)</p> <p>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6조(위원회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15명 _____ _____</p> <p>③ _____ 사람 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_____</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 기능)</p> <p>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모든 사항</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의 해촉)</p> <p>_____</p> <p>_____</p> <p>위촉 해제 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5.

제 출 자 : 기획홍보실장

1. 개정이유

행안부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증원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일부전환,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확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0%이내	17%이내	28%이내	45%이내	11%이내	20%이내	33%이내	36%이상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 509명 ⇒ 513명(증 4명)
- 일반직 계 : 452명 ⇒ 464명(증 12명)
 - 6급 이하 계 : 417명 ⇒ 429명(증 12명)
- 기능직 계 : 54명 ⇒ 46명(감 8명)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09명”을 “513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496명”을 “500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20% 이내	33% 이내	36%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13		-		
정 무 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464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429		-		
별 정 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기 능 직 계	46		-		

신 · 구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u>509</u>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496명 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u>513</u>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500명 2. (현행과 같음)</p>					
<p>[별표 2]</p> <p>2. 기능직공무원</p>						<p>[별표 2]</p> <p>2. 기능직공무원</p>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0%이내	17%이내	28%이내	45%이상	구분	6급	7급	8급	9급		
	11%이내	20%이내	33%이내	36%이상							
<p>[별표 3]</p> <p>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별표 3]</p> <p>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사	회 부	과 직	속 관	동			
총 계	50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52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17		-								
별정직 계	2		-								
6급상당 이하계	2		-								
기능직 계	54		-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사	회 부	과 직	속 관	동			
총 계	51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64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29		-								
별정직 계	2		-								
6급상당 이하계	2		-								
기능직 계	46		-								